

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-제27호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 2007. 03. 30.

제 출 자 사 천 시 장

1. 의결주문

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신청사 신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사천시청 소재지를 신축부지로 변경하여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사천시 소재지를 “벌리동 427-1번지” 에서 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” 로 변경

4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5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담당관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 :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청 및 읍·면·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

별표 사천시의 소재지란 중 “별리동 427-1번지”를 “용현면 덕곡리 501번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[별표]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사천시의 소재지 중 <u>벌리동 427-1번지</u></p>	<p>[별표]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 사천시의 소재지 중 <u>용현면 덕곡리 501번지</u>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【지방자치법】

[일부개정 2006.5.24 법률 제7957호]

제6조 (사무소의 소재지)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^[일부개정 2006.6.29. 대통령령 제19566호]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조항에 있어서의 동은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을 말한다.
<개정 1994.12.20, 1999.8.31, 2005.3.24>
②제1항의 조례는 당해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제6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하되, 특별시,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서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 또는 자치구를 단위로 결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읍·면 또는 동을 단위로 결정한다. <개정 1994.7.6, 1995.7.1, 2006.6.29>
[일부개정 2005.3.24 법률 7398호, 시행일 2005.9.25]